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2

발의연월일: 2020. 3. 4.

발 의 자:정운천·서일준·배준영

홍문표 • 권명호 • 김태호

하태경・박 진・최춘식

박대수 · 하영제 · 김형동

서영석 · 김성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 고 있고, 등록 시 드는 경비는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음.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동 물의 유실·유기의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제12조제5항에"를 "제12조제6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
	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물판매업자는 <u>제12</u> 조제5	③ <u>제12조제6</u>
<u>항에</u> 따른 등록 방법 중 구매	항에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	
청을 하여야 한다.	